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11

발의연월일: 2020. 12. 9.

발 의 자:이개호・위성곤・유동수

윤재갑 · 송갑석 · 서삼석

홍성국 · 김병기 · 인재근

주철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펜션사고 이후, 서비스·안전 관리기준이 강화되고, 국민의 안전한 농촌 관광을 위해 서비스·안전 교육의 품질 제고가 요구되고 있고, 농어촌 민박 사업자의 준수사항도 대폭 강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보유한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를 교육운영 주체에 추가함으로써 교육품질 내실화 등 교육 효과 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사사례) ① 숙박업영업자 위생의무교육 대한숙박업중앙회 위탁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② 식품위생과 관련된 교육 한국식품 산업협회에 위탁(「식품위생법」 제65조) ③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을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의료법」 제86조)

또한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업장 출입문과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 사업장임을 표시('20. 8월)하도록 하였으나, 허위표시하는 경우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86조의2, 제86조의3 및 제130조). 법률 제 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제2호 중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를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안전"으로,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위생·소방안전의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86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한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는 농어 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에 정하 는 바에 따라 서비스·위생·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 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3(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자는 제86조의2제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0조제4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86조의3을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준 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수사항)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 1. (생략)
-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 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 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 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 위생 · 소방안전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 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 설>

개 정 아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준

- 1. (현행과 같음)
-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 |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 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 부렁으로 정하는 서비스·안 수산부렁으로정하는 서비스·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u>한다</u>.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 군수 · 구청장이나 농림축산식 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이 허가한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는 농어촌민박사업 자 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령

3. ~ 5. (생략)

<신 설>

제130조(벌칙)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신 설>

<u>6.</u> ~ <u>9.</u> (생 략)

또는 해양수산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위생·소방 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 까지와 같음)

제86조의3(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자는 제86조의2제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0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 (4) -----
- _____

- 1. ~ 5. (현행과 같음)
- 6. 제86조의3을 위반하여 농어 <u>촌민박사업장임을 표시 또는</u>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7. ~ 10. (현행 제6호부터 제9 호까지와 같음)